

#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 부개정예규안

## 1. 개정이유

-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  
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 
통일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 
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“신분증 사본”  
편철에 갈음하여 신분확인서를 편철하도록 함(안 7.나.(2) 및 안 8.  
나.(2))
-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 
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사본에 갈음  
하여 신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(안 10.)

## 3.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

## 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 부개정예규안

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등기예규 제1716호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7.나.(2)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(「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39호 양식)를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에 편철한다.

8.나.(2)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(「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39호 양식)를 신청서에 편철한다.

10. 본문 중 “신분증 사본” 을 “신분증 사본(다만 신분증이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

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3호 양식의 신  
분확인서)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



여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.

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」 별지 제3호 양식의 신분확인서)-----  
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1394